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박재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상희

판 결 선 고 2026. 7.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2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 10길 20 신천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약 107.8km로 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일렉트릭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측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으로 튕기며 앞으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 편도 4차로 상에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5. 8. 29. 대구광역시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 C를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 27, 29, 31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26, 28,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¹⁾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2대를 연이어 충격하고 나머지 차량들
을 연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 D,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의 중대

1)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도 기재하였으나, 위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제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 측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F에게도 합의금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D,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행히 위 피해자들의 상해는 전치 2주 정도로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2년에 받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명수 _____